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51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민병덕・이인영・김승원
조계원・김영배・김문수
이해민・김 윤・한준호
김태년・임오경・김남근
장철민・이수진・박해철
이훈기・박홍배・김영호
이강일・서영교・안도걸
이용우・이주희 의원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대규모 제품 결함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도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비자집단소송”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6. “총원”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7. “구성원”이라 함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 중 제9호의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8. “대표당사자”라 함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다만, 제70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9. “제외신고”(除外申告)라 함은 구성원이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

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를 “물품등으로”로 한다.

제8장에 제5절(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소비자집단소송

제76조의2(전속관할)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76조의3(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계쟁물이나 소송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76조의4(소의 제기)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제76조의5(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와 원인
6.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7. 대표당사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

제76조의6(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76조의4에 따른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76조의7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決定)으로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의7(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예외로 한다.

② 제7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76조의5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76조의6제1항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자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등으로 선임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등으로 선임된 자는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자 중 대표당사자등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의8(소송적격요건) ① 소비자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 및 제70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와 그의 소송대리인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실현할 수 있을 것
4. 소비자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5. 구성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대표당사자의 피해와 동종의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개별구성원의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 다만, 제70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예외로 한다.
6. 제76조의5에 따른 소장에 기재된 소송적격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76조의9(소송적격 심사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적격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적격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다만,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재판을 할 때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 보정 등을 명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비자집단소송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적격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10(소송적격 심사가 경합된 경우의 처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이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이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관계 법원이나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7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6조의11(소송적격에 대한 결정)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적격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
6. 이유

7.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76조의12에 따른 비용의 예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제76조의12(소송비용의 예납 등) ① 법원이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소송적격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사건의 규모,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납이 유예된 소송비용 및 담보는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13(소송부적격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부적격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해당 법원은 즉시항고이유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적격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소

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14(소송적격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소송적격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소비자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6조의15(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16(구성원 등의 소송관여) ① 구성원은 소비자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6조의17(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소송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76조의18(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6조의19(대표당사자의 변경) ① 대표당사자의 일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76조의17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남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남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구성원 10인 이상이 대표당사자의 변경 또는 추가 선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표당사자 전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76조의17제1항에 따라 소

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20(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76조의16, 제76조의18 또는 제76조의19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6조의21(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 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대리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그 소비자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22(총원의 범위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해당 법원은 즉시항고이유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결정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76조의1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76조의1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23(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76조의14제1항 또는 제76조의22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의24(시효중단의 효력)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1. 제76조의13에 따라 소송부적격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76조의22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3. 제76조의23에 따라 제외신고를 한 경우

제76조의25(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6조의26(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제76조의27(자료제출 명령 등)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등이나 피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자료(관련 사건의 기록, 사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를 소지, 관리, 통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28(검증·감정 등)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할 때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6조의29(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6조의30(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76조의31(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76조의1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32(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

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76조의14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3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76조의34(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76조의31을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76조의35(분배절차 등) 분배절차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9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6조의36(「민사소송법」의 적용) ①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76조의11에 따른 소송적격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배임수재) ①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

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84조의3(배임증재 등) ①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86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76조의5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3의3. 정당한 이유 없이 제76조의27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의4. 정당한 이유 없이 제76조의28제1항에 따른 목적물의 현상보전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비자집단소송”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신 설>	6. “총원”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신 설>	7. “구성원”이라 함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 중 제9호의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8. “대표당사자”라 함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다만, 제70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신 설>	9. “제외신고”(除外申告)라 함은 구성원이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 물품등으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절 소비자집단소송
<신 설>	제76조의2(전속관할)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3(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계쟁물이나 소송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신 설>	제76조의4(소의 제기)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

	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76조의5(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와 원인
	6.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7. 대표당사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
<신 설>	제76조의6(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76조의4에 따른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76조의7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決定)으로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7(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예외로 한다. ② 제7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76조의5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76조의6제1항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자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제1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등으로 선임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등으로 선임된 자는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자 중 대표당사자등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8(소송적격요건) ① 소비자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 및 제70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와 그의 소송대리인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실현할 수 있을 것 4. 소비자집단소송이 총원의 권

	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5. 구성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대표당사자의 피해와 동종의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개별구성원의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 다만, 제70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예외로 한다. 6. 제76조의5에 따른 소장에 기재된 소송적격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 설>	제76조의9(소송적격 심사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적격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적격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다만,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재판을 할 때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 보정 등을 명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비자집단소송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적격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76조의10(소송적격 심사가 경합된 경우의 처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이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직

	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이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관계 법원이나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7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제76조의11(소송적격에 대한 결정)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적격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 6. 이유 7.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76조의12에 따른 비용의 예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신 설>	제76조의12(소송비용의 예납 등) ① 법원이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소송적격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사건의 규모,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납이 유예된 소송비용 및 담보는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76조의13(소송부적격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부적격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해당 법원은 즉시항고이유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적격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76조의14(소송적격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소송적격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소비자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15(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76조의16(구성원 등의 소송관여) ① 구성원은 소비자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제76조의17(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

		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소송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18(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19(대표당사자의 변경) ① 대표당사자의 일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76조의17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남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남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거나 구성원 10인 이상이 대표당사자의 변경 또는 추가 선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표당사자 전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76조의17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76조의20(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76조의16, 제76조의18 또는 제76조의19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21(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 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대리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그 소비자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76조의22(총원의 범위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해당 법원은 즉시항고이유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결정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76조의1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76조의1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76조의23(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76조의14제1항 또는 제76조의22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

		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24(시효중단의 효력)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1. 제76조의13에 따라 소송부적격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76조의22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3. 제76조의23에 따라 제외신고를 한 경우
<신 설>		제76조의25(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26(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27(자료제출 명령 등)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등이나 피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자료(관련 사건의 기록, 사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를 소지, 관리, 통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6조의28(검증·감정 등) ① 법

	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할 때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29(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30(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31(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76조의1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76조의32(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

	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76조의14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76조의3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신 설>	제76조의34(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76조의31을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35(분배절차 등) 분배절차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9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76조의36(「민사소송법」의 적용) ①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76조의11에 따른 소송적격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84조의2(배임수재) ①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

	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를 병과할 수 있다.
<신 설>	제84조의3(배임증재 등) ①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6조(과태료)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76조의5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신 설>	3의3. 정당한 이유 없이 제76조의27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4. 정당한 이유 없이 제76조의28제1항에 따른 목적물의 현상보전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